

# Tax News Flash

## - Transfer Pricing & Customs

January 22 2024

삼성 KPMG TAX 6 본부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 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01 이전가격

#### 필라 2 글로벌 최저한세 – OECD, EU 및 UK 업데이트

##### 유럽연합 국가 필라 2 도입 현황

- 2024년 1월 9일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필라2 규정 현지 도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도입 유예를 선택한 유럽연합 국가: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법령 입안), 몰타 (법안 미공포), 슬로베니아 (법안 제정)
- 상기 국가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유예 승인을 받은 국가들로서 필라2 관련 법률(유예기간 동안 도입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포함)을 제정하고 유예기간(최대 6년)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 B. 도입 유예를 선택하지 않았거나 선택 불가한 유럽연합 국가(표준 타임라인에 따라 2024 년 소득산입규칙(IIR), 2025 년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적용 의무 있음):

- 법안 제정 국가(2024년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도입 포함):
-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벨기에,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법안 공포), 키프로스 (2025년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도입), 스페인(2024년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도입),

## 비 유럽연합 국가 필라 2 도입 현황

- 스위스 - 2024년 이후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소득납입규칙 및 소득납입보완규칙 도입시기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리히텐슈타인 - 2023년 12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및 소득납입규칙은 일반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적용되나 본 법안은 각 정부가 타 국가의 도입시기에 따라 2025년 1월 1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승인하였습니다. 추가로, 법안은 정부가 소득납입보완규칙 적용일자를 확정하도록 승인하였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보다 이른 시점에 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노르웨이 - 2023년 11월 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소득납입규칙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는 2024년 이후 적용됩니다. 소득납입보완규칙 적용일자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 건지 섬/저지 섬/맨 섬 - 2023년 5월 각 정부는 2025년 이후 소득납입규칙 및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 도입 의사를 표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한국: 사전승인제도 (APA) 2022 년 연차 보고서

2023년 12월 한국 과세당국(이하 "국세청")은 2007년 첫 발간 이후 16번째인 2022년 APA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고, 해당 보고서는 납세자가 APA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APA 신청 요건 및 방법, 처리절차, 관련 통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1997년 5월 미국과 최초로 APA 체결을 시작으로 2022년말 현재 912건(누계)의 APA가 신청되어 666건(누계)이 종결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한국 국세청은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 국가와 활발히 APA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1개국과 쌍방 APA를 체결하였습니다.

### - 개요

**신청 및 처리현황:** 2022년 80건의 APA가 접수되었고 67건의 APA가 처리되었습니다. APA 신청 및 처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

있습니다. 납세자의 이전가격에 대한 인식 증가와 신속한 APA 처리를 위한 노력으로 인해 신청 및 처리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컴퓨터/LCD/휴대폰 및 화학/의약 산업의 증가세:** 2022년까지 처리된 APA 666건을 분석해 보면 국제거래의 산업별 성격에 따라 11개의 산업군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LCD/휴대폰 106건, 화학/의약 105건 순으로 많았으며, 기계장비, 자동차/운수장비,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별 거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처리된 APA 67건 중 컴퓨터/LCD/휴대폰 14건, 화학/의약 10건 순으로 많았으며, 도매(종합상사), 자동차/운수장비, 식음료,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별 거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수관계거래 유형:** 2022년 처리된 건을 기준으로 대상거래별 비중을 보면 전체 67건 중 유형자산 거래가 57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거래는 주로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원재료, 반제품 등을 구입하여 제조활동을 하거나, 완제품을 구입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등을 대상거래로 합니다. 다른 10건은 용역거래로 국외특수관계인간의 경영관리, 기술 지원 등의 용역의 제공을 대상거래로 합니다.

**APA 처리기간:** 국세청은 2022년 코로나 상황에서도 쌍방 APA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계약상대국과의 서신 교환을 활성화하고 대면회의를 대신하여 전화·화상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초 APA가 체결된 1997년부터 2022년까지, 일방 APA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종결일까지 평균 1년 9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쌍방 APA의 경우는 개시일로부터 종결일까지 평균 2년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쌍방 APA가 일방 APA보다 처리기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쌍방 APA의 경우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정상가격 산출방법:**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기준으로 2022년까지 처리된 APA를 살펴보면 총 666건 중 600건으로 거래순이익률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거래순이익률법의 여러 이익수준지표(Profit Level Indicator) 중 영업이익률을 사용한 APA가 일방 APA 107건, 쌍방 APA 213건, 총 32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Berry Ratio가 일방 APA 37건, 쌍방 APA 111건, 총 148건에 사용되었습니다.

**협상대상국별 처리현황:** 2022.12.31 기준 진행중인 쌍방 APA 237건의 협상상대국은 일본이 52건으로 가장 많으며, 미국(39건)과 중국(38건)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적 기준으로는 현재까지 처리된 쌍방 APA의 협상상대국은 일본이 13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이 107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02 국제조세

최신예규/판례: 수원지방법원-2022-구합-69002 (2023.10.26)

제목: 이 사건 경영지원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1) 처분개요 및 주요 사실관계

- 주식회사 영○○홀딩스와 일본법인인 글□□아이앤씨는 1992년 일본법인의 의류제품을 한국 내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작투자법인인 원고를 설립함(이하 '제 1차 계약'). 원고는 스포츠웨어의 한국 내 제조, 수입, 판매 등 수행
- 주식회사 영○○는 영○○홀딩스의 분할을 통해 설립된 회사이며, 베트남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음. 원고는 베트남 법인에 아웃도어 제품의 생산을 위탁하고, 생산된 제품을 수입함
- 설립 당시 원고의 주식은 영○○홀딩스가 51%, 일본법인이 35%, 이AA가 14%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2004년 당시 원고의 주주였던 영○○홀딩스, 일본법인, 이AA는 제1차 계약을 해지하고 이AA가 지분 전량을 일본법인 및 주식회사 와이○○○○○○에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간 계약을 다시 체결함(이하 '제 2차 계약'). 또한, 2010년 주식회사 와이○○○○○○는 지분 전량을 영○○홀딩스에 매각하는 주주간 계약이 수정 체결됨(이하 '제3차 계약')
- 국세청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①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영○○홀딩스에 경영지원수수료(이 사건 제1, 2, 3차 계약에 **근거한** 관리수수료를 뜻함, 이하 '관리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영○○홀딩스가 그에 상응하는 경영지원업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고 과다지급한 것이며, ② 원고가 베트남 법인과 의류제품 매입거래를 하면서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였음을 통보하고 과세조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 실시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년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외부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 현지의 비교대상회사들로 정상가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고 결정함
- 과세청은 재조사 결정에 따라 비교대상회사를 재구성하여 이전소득을 산출하였고, 재산출된 이전소득을 바탕으로 과세청의 기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통지함

### 2) 쟁점

- ① 원고가 국내특수관계회사에 관리수수료 지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② 베트남법인으로부터 의류제품 매입하는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적정성 여부

3)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p>1. 하기 사유로 관리 수수료 지급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리수수료는 상호 이해가 상반되는 주주(영○○○홀딩스 및 일본법인) 간 협상에 따라 책정된 것임</li> <li>- 영○○○홀딩스는 국내 시장에서 아웃도어 의류사업을 수십 년 간 영위하면서 <b>축적한</b> 사업 노하우 및 생산관리, 국내 유통채널을 제공하는 등 원고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였고, 영○○○홀딩스가 보유한 상표권인 'XXXXXXXX' 또는 '영ㅇ'을 원고가 사용</li> <li>- 영○○○홀딩스의 직원들이 원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원고에게 제공한 관리용역이 실재하며, 원고의 매출액 증가 및 수익이 이를 통해 개선됨</li> </ul>	<p>1. 하기 사유로 관리 수수료 지급행위에 경제적 합리성이 없으며, 이에 따라 관리수수료 중 자회사가 지주회사와의 공통경비를 분담하는 수준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가 영○○○홀딩스로부터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li> <li>- 2009년 영○○○홀딩스가 분할된 이후 아웃도어 의류사업은 영○○○가 가지게 되어 영○○○홀딩스가 의류사업과 관련한 노하우를 전달할 지위에 있지 않음</li> </ul>
<p>2. 과세청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들과 베트남법인 사이에는 제조 품목이나 거래 방식, 거래상대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각 거래 간 비교가능성이 낮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청이 선정한 비교대상회사들은 이 사건 베트남 법인이 생산하는 '고기능성 아웃도어 의류'와 비슷한 의류만을 생산하는 회사인지, 위탁생산거래만을 하는 회사인지, 비교대상회사의 거래 상대방이 한국 법인인지 등이 증명되지 않음에 따라 비교가능성이 낮음</li> </ul>	<p>3. 베트남 법인과 상황이 비슷한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ORBIS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적정 비교대상회사 선정 절차를 수행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세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외부감사시 적정의견을 받은 베트남 현지의 비교대상회사들로 정상가격 제조사)을 반영하여 비교대상회사를 선정하였음</li> </ul>

4) 판단

- 본 사건 관리수수료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 할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① 원고의 주주들인 영○○○홀딩스와 일본법인 사이의 계약에 근거하여 관리수수료의 지급의무를 이행한 점 ② 계약에 따라 영○○○홀딩스가 한국 내 인적·물적 설비를 통하여 원고의 모든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며, 일본법인 및 이AA는 주주로서 영○○○홀딩스에게 원고의 운영을 위탁하여 한국 시장에 진출하는 등 이익을 얻게 된 점 ③ 영○○○홀딩스를 제외한 이 사건 각 계약의 당사자였던 일본법인, 이AA 등은 영○○○홀딩스에 관리수수료를 지급하고 남은 순 매출액 중에서 배당을 받고, 관

리수수료의 지급 여부 및 그 요율에 관하여 영○○○홀딩스와 이해가 대립되는 관계에 있어 관리수수료 지급을 부당하게 용인해 줄 이유가 없는 점 ④ 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관리수수료의 요율이 계속 변경된 점으로 보아, 각 계약을 체결한 원고의 주주들은 영○○○홀딩스가 제공하는 용역이 실질적으로 존재함을 전제로 그 내용 및 합리적인 대가에 관하여 논의를 거쳐 용역의 내용과 관리수수료의 요율을 변경한 점 ⑤ 원고는 영○○○홀딩스가 보유한 상호를 사용하면서 영○○○홀딩스의 브랜드 인지도를 사용하는 이익을 얻은 점 등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고가 산출한 정상가격은 적법하게 산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① 베트남 법인이 생산하는 의류는 '고기능성 아웃도어 의류'인 반면 비교가능회사들이 생산하는 의류는 일반의류인 점, 베트남 법인은 위탁생산 및 수출거래를 하는 반면 비교대상회사들 중 일부는 자체 상표가 있는 의류를 생산, 판매하는 등 거래의 유형이 다른 점 등 제조 품목이나 거래 유형, 거래 상대방, 판매시장 등에서 베트남 법인과 비교대상 회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제거할 수 있는 합리적 조정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점 ② 선정된 비교가능회사 중 취급 품목, 수행 기능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회사가 존재하는 점 등

## 03 관세

### 2024 관세법 및 FTA특별법 주요 개정사항

#### 1) 납세자 권익 보호

-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 (관세법 제42조의 2)

- 수정신고시에 따른 가산세 경감률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를 유도

종 전	현 행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input type="checkbox"/>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input type="checkbox"/>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30% ○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 ○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 FTA 협정관세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FTA특별법 제36조의2 신설, FTA특별법 시행령 제47조의2 신설)

- 기존 FTA특별법은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면제 규정이 부재하여 관세법 제38조의2를 준용해 왔으나, 관세법 상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부재

- 이번 FTA특례법 조항 신설로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사유를 명확히 함

종 전	현 행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input type="checkbox"/> FTA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면제 규정 부재 → 「관세법」규정* 적용 * 「FTA 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적용(「FTA 특례법」 §3①) ○ (원칙) 보정이자 징수 ○ (예외)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면제 (「관세법」§38의2⑤)	<input type="checkbox"/> 면제사유 명확화 ○ (좌 등)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FTA 협정관세는 일반 관세와는 달리, 체약상대국에서 작성·발행하는 원산지 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추가 * ❶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 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❷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

##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

### ● 자료 보관 의무(관세법 제12조, 관세법 시행령 제3조)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를 보관대상에서 삭제하는 대신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 제출 의무 부여
-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가 포함되어 이에 대한 제출 의무를 명확히 함

종 전	현 행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input type="checkbox"/> 신고·제출 자료 보관 의무 ○ 보관대상	<input type="checkbox"/>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 ○ 보관대상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삭 제>
<추 가>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
○ (보관기간) 제출일부터 5년	○ (좌 등)
○ 보관방법	- (좌 등)
- 장부·서류, 정보보존 장치	
<추 가>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관세법 제37조의4)

- 기존에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권리헌장(제110조) 및 통합조사 원칙(제110조의 2)에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세조사의 정의를 관세법 내(관세법 제2조) 명확히 함에 따라 특수관계자 자료 요구 사유에 “관세조사 시”가 추가됨

종 전	현 행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input type="checkbox"/> 특수관계자 자료요구 ○ (요구대상) 과세가격결정 자료, 증명자료* * 제 30 조제 1 항에 따른 가산요소를 안분·계산하기 위한 자료 ○ (자료제출 방법·범위) ○ (요구시기) - 세액심사 시	<input type="checkbox"/> 자료요구 사유 추가 ○ (좌 등)
<추 가>	- 관세조사 시

3) 세율 관련 조문 정비

● 우회 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제56조의2 신설)

- 기존 관세법은 우회 덤핑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가 부재하여 국내 산업 피해에 적시 대응이 어려웠으나 우회 덤핑 방지제도 도입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과 큰 차이가 없는 우회 덤핑의 경우 즉시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종 전	현 행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
<신 설>	<input type="checkbox"/>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 조사기간 중에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조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그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 및 기간을 정하여 잠정적으로 추계된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하도록 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는 조치 ○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관세법 제83조 및 제108조)



-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 상계, 보복, 편익관세”를 추가하여 용도세율 제도 조문을 정비하고 실효성을 제고함

종 전	현 행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input type="checkbox"/> 용도세율 적용대상 ○ 9 개 탄력세율제도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계절·국제협력·일반특혜 관세	<input type="checkbox"/> 적용대상 확대 ○ (좌 등)
<추 가>	○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input type="checkbox"/> 용도세율 신청제외 ○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신청제외 대상 의미 명확화 ○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용도외 사용 및 양도 ○ (원칙) 용도외사용및양도금지 ○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 -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예외적 허용 대상 정비 ○ (좌 등)
-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제외받은 경우	<삭 제>
<input type="checkbox"/> 사후관리 대상 ○ 용도세율, 관세감면, 분할납부	○ (좌 등)
<신 설>	○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가능

#### 4)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

-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관세법 제21조)

-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특례적용 사유를 추가하여 불복소송 또는 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간 실질 귀속자(실질 화주)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종 전	현 행 (2024년 1월 1일 이후 적용)
<input type="checkbox"/> 관세부과 제척기간 ○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정행위의 경우 10년 이내) ○ 예외 - 불복결정·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 회신일로부터 1년 - 경정청구·가격조정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통지일로부터 2개월	<input type="checkbox"/> 특례적용 사유 추가 ○ (좌 등)

<추 가>

-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 Key Contacts

### 삼성 KPMG TAX6 본부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 02-2112-0982



김상훈 전무

T. 02-2112-7939



김태준 상무

T.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 02-2112-0277



김태주 전무(관세)

T. 02-2112-7448



오영빈 상무(관세)

T. 02-2112-0435

[home.kpmg/socialmedia](https://home.kpmg/socialmedia)



[home.kpmg/kr/ko/home/s  
ervices/tax.html](https://home.kpmg/kr/ko/home/services/tax.html)

[Privacy](#) | [Legal](#) | [Unsubscribe](#)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